

# 운현궁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103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운현궁(사적 제257호)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 소유 문화유산으로서,
- 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전통문화 프로그램 활성화와 다양한 콘텐츠 개발, 열린 문화 공간으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이색 관광명소로서 특화 및 거점화시키고자,
- 다. 문화유산 보존, 전승 또는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해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운현궁 관리 및 운영
- 나.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 운현궁 (사적 제 257호)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4(운니동)
  - 규모 : 대지 7,100㎡, 건물 6동 1,299.36㎡
  - 공간구성 : 노안당 · 노락당 · 이로당, 수직사, 유물전시관, 기획전시실 등

## 다. 위탁개요

- 위탁기간 : 3년 ('25.1월 ~ '27.12월)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소요예산(안) : 902백만원
  - 산출근거(백만원) : 인건비 436, 운영비 156, 행사비 178, 기타 132
- 수탁기관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 위탁사무 범위
  - 운현궁 운영 및 유지·관리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관광진흥을 위한 전통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 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5조

제35조(시 소유 국가유산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시 소유 국가유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 소유 국가유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보존, 전승 또는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
2. 시 소유 국가유산을 관광 자원화하거나 명소(名所)화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

나. 예산조치 : '25년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작성자 : 문화본부 문화유산활용과 권현아 (☎2133-2665 )